2027년 동작구 위탁어린이집 보육교사 1차 정기채용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주요업무
보육교사	00명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일반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2027년 2월 졸업 예정으로 자격증 취득 예정자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어린이집 68개소

구립가온어린이집	구립강마루어린이집	구립고은어린이집	구립곰돌이어린이집
구립까망돌어린이집	구립꿈나무어린이집	구립꿈당어린이집	구립꿈마루어린이집
구립꿈빛하나어린이집	구립나래어린이집	구립노량진어린이집	구립노블어린이집
구립다움어린이집	구립대방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구립도담어린이집	구립도레미어린이집
동작구청어린이집	구립둥지어린이집	구립라온어린이집	구립리가어린이집
구립로미어린이집	구립로야어린이집	구립로이어린이집	구립문화어린이집
구립백합어린이집	구립보라매어린이집	구립비둘기어린이집	구립사당어린이집
구립사당4동어린이집	구립사당빛나어린이집	구립상도3동어린이집	구립상도4동어린이집
구립상도어린이집	구립상도클라베뉴어린이집	구립새봄어린이집	구립새빛어린이집
구립새싹어린이집	구립샛별어린이집	구립선재어린이집	구립숲속자이어린이집
구립신대방1동어린이집	구립신대방누리어린이집	구립아람어린이집	구립아름어린이집
구립아리아어린이집	구립아이누리어린이집	구립양지어린이집	구립연꽃어린이집
구립열린어린이집	구립예담어린이집	구립은솔어린이집	구립은하어린이집
구립이솔어린이집	구립이수어린이집	구립장미어린이집	구립참사랑어린이집
구립큰나무어린이집	구립큰별어린이집	구립키움어린이집	구립태성어린이집
구립트윈파크어린이집	구립푸른어린이집	구립푸른솔어린이집	구립한결어린이집
구립한빛어린이집	구립한울어린이집	구립해와별어린이집	구립흑석어린이집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후 위탁어린이집으로 발령됩니다.

3. 전형절차

○ 공개경쟁

구분		평가항목	비고
1차	서류심사(인사위원회)	· 지원 자격 심사 · 지원 자격 적격자 대상 지원서 심사(100점)	-
인성검사	인성검사	· 면접대상자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2차	면접심사(인사위원회)	· 면접평가(100점)	-

※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함.

4. 채용절차 및 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1차 서류접수	2026. 10. 28.(수) ~ 11. 8.(일)	서류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18.(수)	홈페이지 개별확인
인성검사	2026. 11. 19.(목)	개별통보
2차 면접	2026. 12. 4.(금) ~ 7.(월) * 예정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0.(목) * 예정	홈페이지 개별확인
배정어린이집 발표	2026. 12. 18.(금) * 예정	개별통보
임용장 수여식 및 O.T	2027. 2. 24.(수) * 예정	개별통보

※ 전형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 접수방법: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http://dccic.go.kr)**

○ 2차 면접장소: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임용일: 2027. 3. 1.(월) 예정

※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임용일이 다를 수 있음.

※ 지원서 작성 시 근무 가능일 필수 기재 바람.

5. 접수서류(지원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희망지역 필수선택-다중선택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 경력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실습확인서)

○ 보육 관련 기타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자격증 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 상담 등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이력서는 양식을 준수하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면접 응시 불가**).
※ '보육 관련 기타 자격증' 은 이력서 **기재 후 자격증 사본으로 첨부** 바랍니다(사본 **미제출 시 이력 불인정**).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지원 시 **이수증 필수 첨부** 바랍니다.
※ 희망지역 선택은 어린이집 발령 참고사항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반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검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이며, 채용기관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 담당자(☎02-823-45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